



하나.zip



남북하나재단
Korea *Hana* Foundation

새로운 시작을 돕는 따뜻한 고용 탈북민 고용기업 세제 혜택 강화



1인당 최대 연 1,550만원 세액공제
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
탈북민근로자의 수가 전년에 비해 증가한 기업은
증가 인원 1인당 최대 연 1550만 원씩 3년 동안
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
* **시행령 개정 내용** : '통합고용세액공제' 우대 대상에 탈북민을 포함

* 1인당 세액공제액은 근로자 유형, 기업규모 및 소재지에 따라 다름





탈북민 세액공제 요건

① 국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

소득세법상 국내 **거주자** 또는 법인세법상 **내국법인**에 해당해야 공제 신청 가능!

* 소비성서비스업(유흥주점, 관광숙박업을 제외한 호텔·여관업 등)은 제외

②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 증가

상시근로자의 수가 **직전과 세연도보다 증가해야 함!**

* 근로계약 1년 미만 근로자, 단시간근로자, 직계존비속 및 친족 등은 제외



최대 3년 동안 추가 세액공제 혜택

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이후에 우대대상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하지 않으면, **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추가 2년(총 3년), 대기업은 추가 1년(총 2년) 동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**

구분	1인당 세액공제액 (단위 : 만 원)			
	중소기업(3년)		중견기업(3년)	대기업(2년)
	수도권	지방		
일반 상시근로자	850	950	450	-
우대대상 상시근로자*	1,450	1,550	800	400

*우대대상 상시근로자 : 탈북민, 청년 정규직, 장애인, 60세 이상, 경력단절 근로자 등





세액공제 이후 상시근로자 수가 줄어든 경우

① 감소한 연도부터 세액공제 적용되지 않음

공제받은 연도 종료 후 2년 내에
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하면
감소한 연도부터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음.

* 우대대상 상시근로자(탈북민 포함)의 수가 감소하면 우대 공제 미적용

② 상시근로자 수 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필요

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
법인세로 납부해야 하므로, 상시근로자 수가
감소하지 않도록 사후관리가 필요.

*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(국번없이 126)로 문의





탈북민 일자리 지원 사업

탈북민 고용기업 세제 혜택 강화 이외에도
남북하나재단에서는 **탈북민 고용 확대를 위해**
취업지원, 직업역량강화지원, 창업지원 등
다양한 일자리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

